#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57

발의연월일: 2020. 11. 16.

발 의 자: 구자근 · 조경태 · 권성동

이달곤・김선교・김용판

홍준표 · 김상훈 · 김영식

최춘식 · 윤상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일환으로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기존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20.8.12 시행) 하고 있음.

그러나 감면 혜택을 주는 대상의 기준이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으로 대다수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면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택실수요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감면 대상 주택을 확대하여 주택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36조의3).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본문 중 "7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3억원"을 "4억원"으로, "4억원"을 "6억원"으로, "2021년"을 "2026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억 5천만원"을 각각 "2억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	
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	
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	
이 <u>7천만원</u> 이하인 경우에는	<u>9천만원</u>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	
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	
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u>3억원(</u>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u>억원</u> 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u>2021년</u>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 당시의 가액이 <u>1억 5천</u>
  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u>1억 5천</u>
  <u>만원</u>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 ② ~ ⑥ (생 략)

<u>4억원</u>	
	<u>6</u>
억원	
	<u>2026년</u>
1	· <u>2억원</u>
<b>.</b>	
2	<u>2억원</u>
② ~ ⑥ (현행과	같음)